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 안	16
번 호	

제출년월일 : 1998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정이유

- 정부의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98. 6. 22)에 의거 행정기구를 감축조정하여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국 4과를 감축하고,
- 기구관련조례에 대한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운영에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등의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현재의 3국 2담당관 19과에서 1국 4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5과로 개편함

나. 기구감축 내용으로는

- 폐지
  - 국(1) : 사회산업국
  - 과(2) :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 통합 : 6과 → 3과
  - 시민과 + 지적과 → 민원봉사과, 산림과 + 축산과 → 산림축산과
  - 도시과 + 교통행정과 → 도시교통과
- 신설 : 과(1) - 문화관광과

- 명칭변경
  - 국(1) : 건설도시국 → 산업건설국
  - 과(2) : 문화공보담당관실→공보전산담당관실, 농정과→산업과

다. 본청의 국장,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라. 보좌기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둠(안 제3조)  
마.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둠(안 제4조)  
바. 총무국의 분장사무와 국에 두는 과를(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규정함(안 제5조)  
사. 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와 국에 두는 과를(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규정함(안 제6조)  
아.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차.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3조 내지 제15조)  
카. 읍·면·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타.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함(안 부칙)  
- 기구관련조례 통합제정에 따른 관련조례 폐지 - 10건  
- 기구감축·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 용어를 정비함 - 33건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개편기구표 1부
- 기구·정원승인(협의) 공문 사본 1부
-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 모델안 시달」 공문사본 1부.
- 관계법령(발췌) 1부.

##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세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공무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4. 읍·면·동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선거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보수, 임면, 상벌에 관한 사항
7. 정집, 소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세마을 조직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에 관한 사항
10. 건전생활 육성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 및 시금고에 관한 사항
16. 세출예산의 경리, 계약에 관한 사항
17. 국·공유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및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20. 호적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1.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23. 고용촉진, 직업안정,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4.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25. 가정·아동·노인·부녀·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6.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항
27. 문화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28.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29.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0. 순홍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  
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4. 인삼 및 특용작물의 재배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광공업, 물가, 가스, 연료 및 전기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에 관한 사항

9.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0.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11. 산림관리, 조림, 양묘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12. 축산, 수의, 초지, 낙농, 사료 등에 관한 사항

13. 삭육관련 인·허가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4. 도로·하천·소하천·공유수면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설기계·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16.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

17. 농업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

18. 치수행정,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19. 지역방재 대책 및 재난관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교량·하천 등 시공·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2.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3. 건설업 면허 및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4. 공원, 온천,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2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26. 교통안전, 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27. 주택시설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8.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29. 택지조성 및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0.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 3 장 직 속 기 관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업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131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사업 및 기계화 영농지도
5. 농촌생활 개선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8. 시설원예, 체소, 과수, 인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1.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11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둔다

제12조(업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 4 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 사업의 기획 및 실시
- 나.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 라.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 부과징수
- 마.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 바. 상수도 사용허가 및 수질보존
- 사.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 아.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 자. 각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관리 운영
- 차. 정수의 생산공급
- 카.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 타. 그 밖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2. 환경사업소

- 가. 분뇨, 하수, 쓰레기 침출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 나. 분뇨, 하수, 쓰레기 침출수의 위생처리 및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 다. 분뇨, 하수, 쓰레기 침출수의 처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 마. 차접관로 신설 및 유지관리
- 바. 기타분뇨, 하수종말처리 및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관한 사항

3. 순홍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가. 순홍문화유적권의 관리·운영
- 나. 순홍문화유적권 및 소수서원의 문화재 보호·관리·경비
- 다. 문화재 공개 및 관람료 징수

라. 충효교육관 관리운영 및 충효교육에 관한 사항

마. 순홍문화유적권의 홍보·안내

바. 기타 순홍문화유적권 및 소수서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여성복지회관

가. 여성교육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나.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다. 여성의 교양, 기술, 취미강좌 및 상담활동

라.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여성단체 활동지원

마. 취학전 아동 수탁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바.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촉진 등

5.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가. 운동장 및 체육관의 설비보수, 유지관리

나. 경기장의 사용허가 처리

다.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라.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

마. 기타 운동장 및 체육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시민회관

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대관 및 무대공연 관리

다. 영사, 음향, 통신시설 유지관리

라. 냉·난방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마. 회관 사용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회관의 사용료 및 기타 제수입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회관사용에 관한 협조 사항

### 제5장 읍·면·동

제1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영주시 조례 제126호)
2.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3.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4. 영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5. 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6.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
7. 영주시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8.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9.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10.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하고, 다목중 “총효교육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을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으로 하며, 제3호 가목중 “사회산업국”을 “산업건설국”으로 하고, 나목을 삭제하며, 다목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여성복지회관”을 삭제한다
2.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영주시보건소, 영주시수도사업소, 영주시환경사업소,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영주시여성복지회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영주시민회관, 각읍면동.
3.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중 “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4.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중 “예산계장으로”를 “예산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5.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7조 제2항중 “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를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6. 영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중 “실·과담당계장 또는 실무자”를 “업무담당자”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계”란을 삭제하며,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7.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중 “감사계소속공무원으로”를 “감사업무담당자로”로 한다
8. 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9. 영주시민대상조례 제7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10. 영주시순홍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이”를 “관광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11. 영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중 총무과 단위사무명 “제3호”란을 삭제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농정과”를 “산업과”로, “산림과”를 “산림축산과”로, “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상하수도과”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12. 영주시지방행정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중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부녀복지계장”을 “부녀복지담당6급”으로 한다
13. 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4. 영주시수입증지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계”를 각각 “취급자”로 하고, “계장”을 각각 “담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중 “담당”을 “취급자”로 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15.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 제4조 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16.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이”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17. 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18.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중 “노인복지담당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중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을 삭제한다
19.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중 “직판장담당계장”을 “직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0. 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교통행정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교통지도계장이”를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21.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중 “담당계장 및 직원”을 “담당”으로 한다
22.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중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을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3.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7조 제2항중 “도시계획계장이”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도시계획관계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24. 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25. 영주시건축조례 제65조 제5항중 “업무주관계장이”를 “소관업무 담당주사가”로 하고, “업무담당자가 되며”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로 하며, 제66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26.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별표1】 중 “영주시상하수도과”를 “영주시수도사업소”로 한다
27.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본문중 “수도사업소장 또는”을 삭제한다
28.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토지관리업무주관계장이”를 “지가관리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29.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항중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이”를 “지가관리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30.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중 “영주시농촌지도소”를 “영주시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9조 제6항중 “기술개발계장이”를 “기술개발담당주사가”로 한다

31.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3조 제4항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계장이”를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32.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총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중 “총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을 “순홍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33.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2항중 “부읍면장으로”를 “세마을 또는 환경복지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별표1]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주시보건소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	영주시 일원
영주시보건소풍기읍지소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76번지	풍기읍,봉현면일원
영주시보건소이산면지소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768-3번지	이산면일원
영주시보건소평은면지소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30-7번지	평은면일원
영주시보건소문수면지소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466-1번지	문수면일원
영주시보건소장수면지소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1040-1번지	장수면일원
영주시보건소안정면지소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75-2번지	안정면일원
영주시보건소순흥면지소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14-4번지	순흥면일원
영주시보건소단산면지소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236-10번지	단산면일원
영주시보건소부석면지소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445-4번지	부석면일원

[별표2]

##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주시이산면 월림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1151-1	두월리, 내림1리, 용상2리
영주시평은면 평은리보건진료소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13-1	평은리, 천본리
영주시문수면 조제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546-7	조제리, 벌사2리
영주시장수면 소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432-3	소룡리, 호문2리
영주시장수면 성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553-1	성곡1·2리, 갈산1·2리
영주시장수면 두전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534-4	두전1·2·4리
영주시안정면 용산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535-1	용산리, 여륵리
영주시안정면 오계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안정면 오계리 418-4	오계리, 대평리, 단촌리
영주시봉현면 노좌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201-5	노좌리, 하촌리, 유전리
영주시순흥면 배점리보건진료소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222-3	배점리, 덕현리, 내죽2리
영주시단산면 구구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893-2	구구리, 사천리, 동원2리
영주시부석면 임곡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353-10	임곡리, 남대리, 북지리
영주시부석면 상석리보건진료소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413-5	상석리, 감곡리, 보계리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관련)

명    칭	위    치
영주시수도사업소	영주시 고현동 388-3번지
영주시환경사업소	영주시 적서동 472번지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2-8번지
영주시여성복지회관	영주시 영주동 479-2번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영주시 가흥동 산21-1번지
영주시민회관	영주시 영주동 470-62번지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lt;생략&gt;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위원회</li> <li>2. 총무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정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다. 보건소, <u>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u>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li>3. 산업건설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다. 지도소,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ol> </li> </ol>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lt;현행과 같음&gt;          ② .....          1. ....          2.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u>공보전산담당관실</u> .....          나. ....          다. ...., <u>순흥문화유적관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u> ...          3. ....          가. <u>산업건설국</u> .....          나. &lt;삭 제&gt;          다. <u>농업기술센터</u>.....&lt;삭 제&gt;....</p>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생 략&gt;</li> <li>2. 영주시농촌지도소, 영주시보건소, 영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 영주시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영주시여성회관관리사무소, 영주시위생환경사업소,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영주시민회관관리사무소, 각읍면동</li> <li>3.~5. &lt;생 략&gt;</li> <li>② &lt;생 략&gt;</li> </ol>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lt;현행과 같음&gt;          2.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영주시보건소, 영주시수도사업소, 영주시환경사업소, 영주시순흥문화유적관관리사무소, 영주시여성복지회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영주시민회관, 각읍면동          3.~5. &lt;현행과 같음&gt;          ② &lt;현행과 같음&gt;</p>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정조정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간사와 서기) ① &lt;생략&gt;          ② 간사는 결정사항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6조(간사와 서기) ① &lt;현행과 같음&gt;          ② ..... 업무담당주사가.....</p>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8조(간사) ..... .....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등) ①<생략> ②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7조(간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업무담당주사가.....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행정법규상담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담당계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계, 계장	제7조(임석) ..... .....업무담당자 ..... ..... 【별지 제2호 서식】 중 <삭제>, 담당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생략> ②간사는 영주시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현행과 같음> ②..... ..... 감사업무 담당자로 .....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지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⑤<생략>	제2조(구성) ①....., 문화관광과장..... ..... ②~⑤<현행과 같음>

(제31회 - 총무 제1차 부록)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팀 당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문화 관 광 과 장 .....업무 담당 주사과 .....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 공보팀당관,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②<생략>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 문화 관 광과 장, ..... 관 광업무 담당 주사과..... ②<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소관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 임 기 관	소관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 임 기 관
총무과	1.<생략>	1.~2<생략> 3.읍·면·동 계장 보직발령	시방공무원법 제6조	읍·면·동 장	1.<현행과 같음>	1.~2<현행 과 같음> <삭제>	1.~2<현행 과 같음> <삭제>	.....	.....
시민과	<생략>			민원 봉사과	<현행과같음>				
농정과	<생략>			산업과	<현행과같음>				
산림과	<생략>			산림 축산과	<현행과같음>				
도시과	<생략>			도시 교통과	<현행과같음>				
상하 수도과	<생략>			수도 사업소	<현행과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법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생략>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현행과 같음>
1. 전문위원	1. <삭 세>
2 ~ 3<생략>	2 ~ 3<현행과 같음>
4. 부녀복지계장	4. 부녀복지담당6급
5. 여성복지회관교육계장	5. <삭 세>
6 ~ 15<생략>	6 ~ 15<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등) ① <생략> ②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 한다. ③~④ <생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관광과장 ..... ..... ③~④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중 “계”, “계장”	【별지 제4호서식】 중 “취급자”, “담당”
【별지 제4-1호서식】 중 “계” “계장”	【별지 제4-1호서식】 중 “취급자”, “담당”
【별지 제6호서식】 중 “계”, “계장”	【별지 제6호서식】 중 “취급자”, “담당”
【별지 제10호서식】 중 “담당” “계장”	【별지 제10호서식】 중 “취급자”, “담당”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의원2명, 금융업전문가2명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건설국장 ----- -----

## 신·구 조문 대비표

##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공무원) 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총무국장</u> 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②..... <u>산업건설국장</u> .....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

## 신·구 조문 대비표

## 【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u>사회산업국장</u> , 기금출납원은 <u>의료보장계장</u> 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u>총무국장</u> , ..... <u>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u> 로..... ②<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 【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계관직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생략> 2. 기금 출납원 : 노인복지담당계장 ②<생략>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취·지출 및 출입에 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와현급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관직 지정) ①..... ..... 1. <현행과 같음> 2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 ..... <삭 제> .....

## 신·구 조문 대비표

##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계관직)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직판장 담당국장 2.기금출납원 : 직판장 담당계장 ②<생략>	제17조(회계관직) ①..... ..... 1. .... 2..... : <u>직판장업무담당주사</u> ②<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무국장 2. 사회산업국장 3. 건설도시국장 4. 기획감사담당관 5. 교통행정과장 6 ~ 10 <생략> ③<생략>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1. .... 2. <u>산업건설국장</u> 3. <삭제> 4. .... 5. <u>도시교통과장</u> 6 ~ 10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생략>	제5조(간사와 서기) ①..... .....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가..... ..... ②<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한해업무 담당계장 및 직원이 된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 ----- ----- 담당 -----.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공무원) ①<생략> 1. 기금운용관 : 자연재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 ②<생략>	제6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 2. .... :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 ②<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도시계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 소속직원 .....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생략> ②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u>건설도시국장이 겸임한다.</u>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 <u>산업건설국장</u> .....

## 신 · 구 조문대비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④<생략>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업무주관계장이</u> , 서기는 <u>업무담당자가</u>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조정내용을 작성 <u>비치</u> 하여야 한다 ⑥~⑦<생략>	제6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④<현행과 같음> ⑤..... ..... <u>소관업무 담당주사가</u> ..... <u>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u> ..... ..... ⑥~⑦<현행과 같음>
제66조(조정소위원회) ①<생략> ②조정소위원회의 의장은 <u>건설도시국장이</u> 된다 ③<생략>	제66조(조정소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u>산업건설국장</u> ..... ③<현행과 같음>

## 신 · 구 조문대비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중 “영주시상하수도과”	【별표 1】 중 “영주시수도사업소”

## 신 · 구 조문대비표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16<생략>	제29조(권한의 위임) ----- ----- ----- ----- 1~16<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도시</u> <u>국장</u> 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⑤ <생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총무국장</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u>토지관리업무주관계장</u> 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u>지가관리업무담당주사가</u> .....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u>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u> 이 되고, 서기 는 <u>담당공무원</u> 이 된다 ③<생략>	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u>지가관리업무담당주사가</u> .....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연구소는 <u>영주시동촌지도소</u> 내에 둔다	제2조(위치) ..... <u>영주시농업기술센터</u> .....
제9조(운영위원회) ① ~ ⑤<생략>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기술개발계장</u> 이 된다 ⑦<생략>	제9조(운영위원회)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 <u>기술개발담당자</u> ----- ⑦<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국민건강증</u> 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건강증진업무</u> 담당주사가.....

###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총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 총효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사전에 <u>총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u> (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허가) ..... <u>순홍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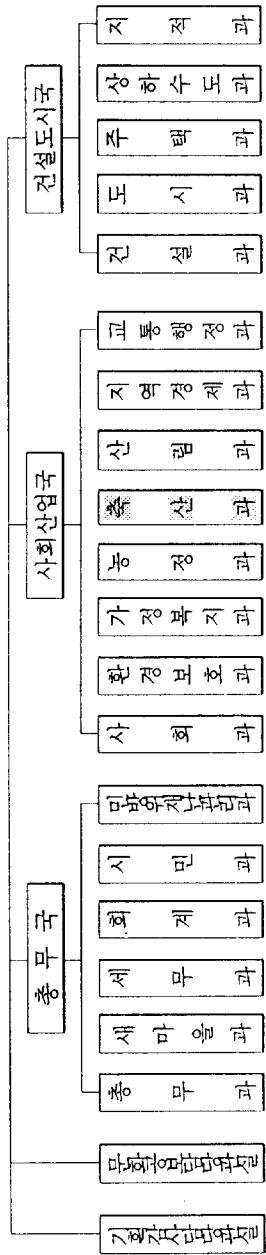
###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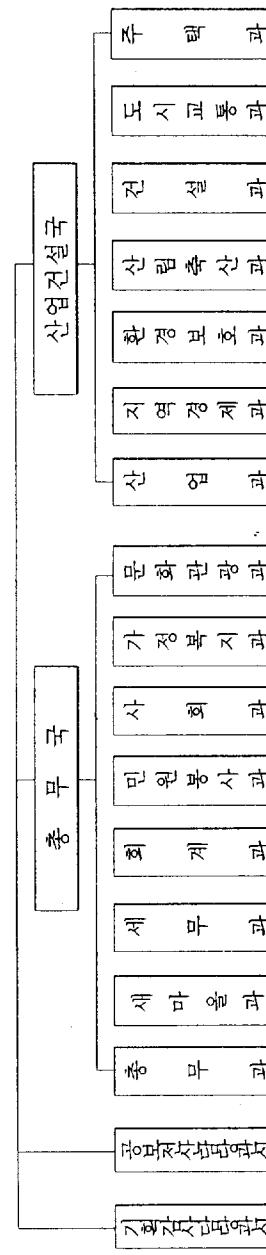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8조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부읍면장으로</u> 한다	제 8 조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새마을 또는 환경복지업무담당주사로</u> .....

# 榮州市 本廳改編(案)

**現在機構** - 3국 2남당관 19과



**改編機構(案)** - 2국 2남당관 15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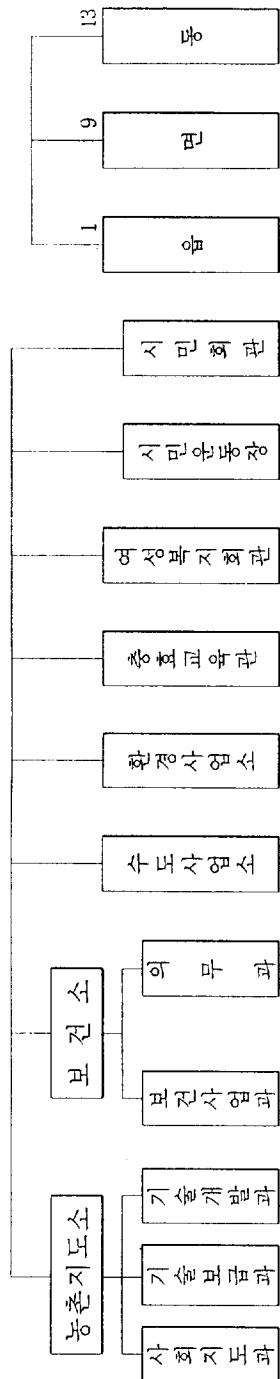


\* 국 : 폐지(1) - 사회산업국, 명칭변경(1) - 건설도시국 → 산업건설국  
\* 과 : 폐지(2) -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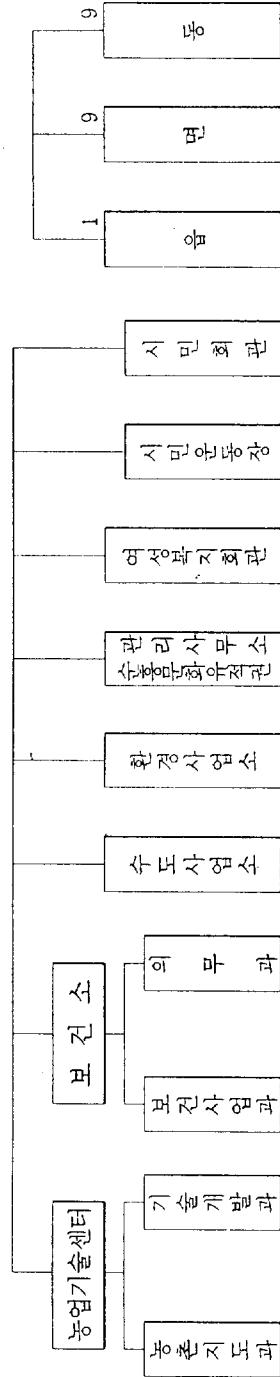
통합(3) - 민원봉사과(시민과 + 지적과), 산림축산과(산림과 + 축산과), 도시교통과(도시과 + 교통행정과)  
명칭변경(2) - 문화공보담당관실 → 공보전산담당관실, 농정과 → 산업과

## 直屬機關·事業所·邑面洞 機構表(案)

### 現在機構



### 改編機構(案)



명칭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충효교육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통합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 기술개발과, 동통·폐합 4동(13동 → 9동)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우707-702 대구.북구.산격동 1445-3 / 전화 950-3326 / 전송 950-2548  
지방과장 정 송, 조직관리개장 김남일, 담당자 민인기

문서번호 지방 12200-1099

시행일자 1998. 8. 25. (10년)

(경유)

수 신 시장·군수

참 조 총무·내무과장

### 제 목 시군 조직개편 협의승인

1. 관련문서 대호 : 붙임
2. 위 관련호로 신청한 시군조직개편 협의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자제12200-278, '98. 8. 21)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빠른 시일내에 직원인사를 포함, 조직개편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지방12200-1043('98. 8.13)호로 시정지시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여 의회 조례상정 등 심의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관련문서 대호 1부  
2. 시군조직개편 승인서 1부 끝.

경상북도지사

-29-

### III. 機構減縮

#### ① 本廳「室局」「課」「擔當」

시군별	현 행 (A)			조정기준		실제감축 (B)			조정후 (A-B)		
	국	과	계	국	과	국	과	담당	국	과	담당
合 計	45	439	1,471	-14	-122	-14	-124	-112	31	315	1,359
市 計	45 (4)	250 (27)	826 (83)	-14	-61	-14	-63	-52	31	187	774
포항시	7	25 (3)	90 (7)	-3	-5	-3	-5	-2	4	20	88
경주시	7 (2)	32 (7)	99 (21)	-3	-10	-3	-10	-14	4	22	85
김천시	4	26 (2)	83 (7)	-1	-8	-1	-8	-4	3	18	79
안동시	5 (1)	26 (3)	87 (9)	-2	-8	-2	-8	-7	3	18	80
구미시	6 (1)	26 (1)	91 (10)	-1	-3	-1	-3	-4	5	23	87
영주시	3	21 (1)	73 (3)	-1	-4	-1	-4	-4	2	17	69
영천시	3	23 (3)	74 (7)	-1	-6	-1	-7	-4	2	16	70
상주시	3	24 (3)	77 (7)	-1	-7	-1	-7	-6	2	17	71
문경시	3	22 (2)	72 (5)	-1	-5	-1	-5	-1	2	17	71
경산시	4	25 (2)	80 (7)		-5		-6	-6	4	19	74
郡 計		189	645		-61		-61	-60		128	585
군위군		15	48		-6		-6	-4		9	44
의성군		16	51		-5		-5	-1		11	50
청송군		13	49		-4		-4	-6		9	43
영양군		13	48		-5		-5	-9		8	39
영덕군		16	54		-5		-5	-4		11	50
청도군		15	49		-4		-4	-4		11	45
고령군		14	48		-5		-5	-5		9	43
성주군		16	51		-5		-5	-2		11	49
칠곡군		16	54		-5		-5	-5		11	49
예천군		16	50		-5		-5	-5		11	45
봉화군		13	49		-4		-4	-4		9	45
울진군		16	54		-5		-5	-6		11	48
울릉군		10	40		-3		-3	-5		7	35

\* 기준변경 : 영주시 22 → 21과 (△1과, 기감축), 영천시 23 → 22과 (△1과, 기감축)  
 경산시 1국7과 → 5과 (△1국2과, 행자부 승인)

1995년 주세계문화엑스포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관인생략"

## 경상북도

우 702-702 대구·북구·산격동 1445-3 /전화 (053)950-3325 /전송 950-2548  
지방과, 과장 정 솔, 조직관리계장 김남일, 담당자 윤종수

문서번호 지방 12200-118P

시행일자 1998. 9. 1. (5년)

수 신 시장·군수

참 조 총무과장

### 제 목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 시달

- 행정자치부 12200-323 ('98. 9. 9)호와 관련입니다.
- 현재 진행중인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규칙개정안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규칙운영에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고 있어 자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임과 같이 통합조례·규칙 모델안을 서달하니 입무에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미 의회심의를 거쳐 개정완료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추후 의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여 재개정하고, 그 이전단계에 있거나 조례개정안 작성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즉시 조직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여 조례·규칙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정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 1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군에 발송). 끝.

경상북도지사

전결 지방과장 정 솔

- 3 / -

## 관 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94. 12. 20)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8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4】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실 · 국	실 · 과 · 담당관
인구10만미만	-	15개 이내
인구10만미만(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실·국 이내	17개 이내
인구10만이상 15만미만	2실·국 이내	17개 이내
인구15만이상 20만미만	3실·국 이내	18개 이내
인구20만이상 30만미만	4실·국 이내	22개 이내
인구30만이상 50만미만	5실·국 이내	23개 이내
인구 50만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실·국 이내	25개 이내
인구50만이상 70만미만 (구를 설치한 시)	4실·국 이내	20개 이내
인구70만이상(구를 설치한 시)	5실·국 이내	22개 이내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6호
- 의 안 명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해당부서 : 총무국 총무과

## 2. 제안이유

- 정부의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98. 6. 22)에 의거 행정기구를 감축조정하여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국 4과를 감축하고,
- 기구관련조례에 대한 규정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발생되는 등 조례운영에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의 기구관련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현재의 3국 2담당관 19과에서 1국 4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5과로 개편함.
- 나. 기구감축 내용으로는
  - 폐 지   └ 국(1) : 사회산업국  
            └ 과(2) :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 통 합 : 6과 → 3과
  - 시민과+지적과→민원봉사과, 산림과+축산과→산림축산과,  
도시과+교통행정과 → 도시교통과
- 신 설 : 과(1) - 문화관광과
- 명칭변경
  - [국(1) : 건설도시국 → 산업건설국]
  - [과(2) : 문화공보담당관실 → 공보전산담당관실,  
    농정과 → 산업과]

- 다. 본청의 국장,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 라. 보좌기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둠(안 제3조)
- 마.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둠(안 제4조)
- 바. 총무국의 분장사무와 국에 두는 과를(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규정함.  
(안 제5조)
- 사. 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와 국에 두는 과를(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규정함.  
(안 제6조)
- 아.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 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차.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카. 읍·면·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타.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함(안 부칙)
  - 기구관련조례 통합제정에 따른 관련조례 폐지 - 10건
  - 기구감축·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용어를 정비함 - 33건

#### 4. 검토의견

#####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의 설치 ·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 ○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 '98. 2. 25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건국이후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지방조직 감축개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기구관련조례에 대한 규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구관련조례 준칙에 의하여 제정코자 함이며,

#####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1998. 6. 22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 현재의 3국 2담당관 19과에서, 1국 4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5과로 개편하는 안으로써

○ 기구감축 등의 내용으로는

- 사회산업국을 폐지하고 분장업무를 총무국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며,  
건설도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산업건설국 2국을 두며,
-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상하수도과 등 2개과를 폐지하고
-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하고
- 산림과와 축산과를 산림축산과로 하며,
- 도시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도시교통과로 하여,  
6개과를 3개과로 통합하며,
-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농정과를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 직속기구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인 충효교육관을 순홍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달된 통합 조례모델안에 따라

- 현행 개별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조직(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 제1조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제2조에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 제3조에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두고
- 제4조에 총무국, 산업건설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 제5조에 총무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8개과를 두고, 총무국장의 분장업무를 규정하였고
- 제6조에 산업건설국에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등 7개과를 두고 산업건설국장의 분장업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위치, 소장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소장 및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홍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의 설치 및 소장, 업무를 규정하였고,
-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읍·면·동의 직무, 읍면동장, 관할구역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 부칙 제2조에서는
  - 영주시조례 제126호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 기구관련조례 통합제정에 따른 10건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구감축,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계조례중 관련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 각종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를 축소 조정하고,
  - 농정(산업)·축산·산림 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의 구조 조정과,
  -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증복기구를 통·폐합하며
  -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 생산적인 조직원리 구현을 위한 통솔범위의 확대로 1국은 최소 4과이상, 1과는 최소 4담당이상으로 하여 「대국대과주의」의 실현과
  -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여 중간의사 결정과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 사무분장을 과단위로 규정하므로서, 권한의 하부이양 위임으로 주민서비스 및 접근성을 향상토록 하였으며,
  -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경우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부읍면장, 사무장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으며,
- 실과소별 업무분장은 '98. 8. 31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국에 대한 업무는 조례에서 정하고, 실과소별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지방조직 개편지침과 지역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조직을 정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98.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완 기